■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[별지 제5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년 환급 제 호

가납금(보관금) 환급안내서

수신자: 귀하(우편번호 주소)

1. 귀하가 우리 청에 납부한 가납금(보관금) 중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하고자 하니 년 월 일까지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우리 청 환급 담당자(전화번호 ○○○○, 팩스번호 ○○○○ 성명 ○○○)에게 알려 주시거나, 아래 무통장입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속히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.

(우편 송부 시 주소) 시 동 번지 ○○공소청 재산형 집행계 보관금 환급 담당자 앞

※유의사항: 통장은 반드시 귀하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이어야 하며(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은 제외),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 환급 청구를 하실 때에는 이 안내서 및 주민등록증,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, 오후 3시까지 나오셔야 당일 환급이 가능합니다.

3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 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 급 사 유

가납(보관)일	가납(보관)금액	환 급 금 액	환 급 사 유	비 고

년 월 일

○ ○ 공소청 검사 ○○○ 인

자르는 선

년 환급 제 호

무통장입금 청구서

거래은행명	예금주 성명	계좌번호	연락 전화번호
			▶휴대전화: ▶자 택:

본인에 대한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인

(주민등록번호:)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